

하로 완화하기 위해 2004.3.15부터 22일간의 임법예고 기간을 거쳐 제출되었음

나. 개정안의 주요특징

개정안의 주요요지

-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뉴타운사업을 시행하는 지구안의 제2종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도록 완화규정을 신설하였음

검토결과

- 동 개정조례안은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은평뉴타운 등 도시개발구역내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원주민과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확보 공급하기 위하여 현행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5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제2종전용주거지역 상한용적률 150% 이하까지 완화시키는 것으로
- 은평뉴타운사업지구는 은평구 진관내·외동, 구파발동 일대(108만여평) 개발제한구역내 낙후지역 시가지를 개발, 정비하여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임대 및 분양주택의 건립을 통해 서민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공급계획은 14,000세대 39,200명으로 단독 600세대, 연립 1,500세대, 임대아파트 4,750세대, 분양아파트 7,150세대이며, 개발방식은 도시개발방식에 의한 공영개발로 사업시행자는 SH공사임
- 지난 2003.12.30 건설교통부로부터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시 “「집단취락 등 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 의하여 300호 이상 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중밀도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까지)을 부여할 경우 국민임대주택단지(국민임대주택이 총세대수의 50% 이상인 주택건설지역) 조성사업 부지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승인조건에 따라 임대주택 건립 세대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용적률 상향조정이 필요한 실정임
- 또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58호(2004.2.24)로 고시된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내용중 토지이용계획상 주거용지에 대한 용도지역도 제1종과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세분되어 있는 바, 건설교통부의 승인조건 이행과 뉴타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제2종 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긴 하나 전용주거지역에 충고제한 없는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용적률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총고 4층이하)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은 용도지역 관리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으며 더구나 특정지역을 겨냥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임법체계상의 균형성, 형평성을 해칠 우려는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뉴타운사업을 시행하는 지구안의 제2종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558
------	-----

2004년 9월 13일
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4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4년 8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151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2004. 9. 7일)

-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교통국장 정순구)

가. 제안이유

생활·시정정보 및 건전한 문화·예술을 보급하여 시민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통방송본부의 사업에 텔레비전방송 등을 추가함에 따라 방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1). 교통방송본부의 사업에 텔레비전 방송채널사용사업과 뉴미디어(인터넷, 지하철TV 등)방송을 추가함에 따라 교통방송 운영의 목적규정을 정비하고, 관련 방송용어를 추가하여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

2) 방송기본편성표에 대한 결정권자를 종전의 시장에서 시장이 선임한 방송편성책임자로 변경하고, 방송의 편성 및 운행에 대한 책임자의 선임과 책임의 범위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5조).

3) 시장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프로그램의 수준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프로그램의 제작을 외주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4) 시장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광고와 뉴미디어를 통한 광고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5) 시장은 교통방송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 및 민간과의 기술·업무 제휴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

다. 참고사항

1). 관계법규 : 방송법(별첨)

2). 예산조치 :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에 54억 원 반영 예정임.

3). 기타

가)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나) 입법예고 : 입법예고(2004. 8. 11.~ 8. 24.) 결과, 의견 없음.

다)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결과, 규제사무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